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740
------	-----

제안년월일: 2009. 2. 24.
제안자: 교육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문의 인용부분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교육감의 권한 중 개방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기타 위임사항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 교육감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띠어쓰기를 상위법의 제명과 일치시킴(안 제1조).
-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권”을 추가함(안 제5조제18의 2호).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본문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안 제5조제18의2호의 각 목에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권”을 추가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 표

(다음 페이지에 계속)

		<u><신설></u>	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권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18의3.~33. (생략)	18의3.~33. (현행과 같음)	18의3.~33. (개정안과 같음)	18의3.~33. (개정안과 같음)
제 6조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생략) 1.~4. (생략) 5. <u>6급 이하</u>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6.~15. (생략)	제 6조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u>당해 학교 소속</u> 6.~15. (현행과 같음)	제 6조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안과 같음) 1.~16.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u>16. 당해 학교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단,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 휴직은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u>	<u>제7조(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생략)</u> 1.~6. (생략) 7. <u>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u> <u>(기관장 제외)</u> 8.~13. (생략)	<u>제7조(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현행과 같음)</u> 1.~6. (현행과 같음) 7. <u>당해 직속기관 소속</u> <u>(기관장 제외)</u> 8.~13. (현행과 같음)	<u>제7조(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안과 같음)</u> 1.~14.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u>14. 당해 직속기관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단,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 휴직은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u>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6급 이하”를 “당해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의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의2. 제17호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에 대한 「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과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권
- 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사회 소집 승인
- 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원 취임승인
- 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취임승인 취소
- 마. 법 제20조의3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해제
- 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
- 사. 법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 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수리
- 자. 법 제46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제6조제5호 중 “6급 이하”를 “당해 학교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당해 학교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단,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

제7조제7호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를 “당해 직속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기관장 제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당해 직속기관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단,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하급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의 권한중 일부를 각각 하급기관 또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생략) 1.~3. (생략) 4. <u>6급</u>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5.~18. (생략) 18의2. 제17호 각급학교를 <u>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u>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u>당해 지역교육청 소속</u> 5.~18. (현행과 같음) 18의2. <u>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에 대한 「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과 다음 각 목의 사항</u> 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개방이사의 <u>추천권</u> 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사회 <u>소집 승인</u>

(다음 페이지에 계속)

	<p><u>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원 취임승인</u></p> <p><u>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취임승인 취소</u></p> <p><u>마. 법 제20조의3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해제</u></p> <p><u>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u></p> <p><u>사. 법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u></p> <p><u>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수리</u></p> <p><u>자. 법 제46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u></p>
18의3.~33. (생략)	18의3.~33. (현행과 같음)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생략)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현행과 같음)
1.~4. (생략) 5. <u>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u> 6.~15. (생략)	1.~4. (현행과 같음) 5. <u>당해 학교 소속</u> 6.~15. (현행과 같음)
<u><신설></u>	<p><u>16. 당해 학교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단,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u></p>
제7조(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생략)	제7조(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현행과 같음)

1.~6. (생략) 7. <u>6급 이하</u>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8.~13. (생략)	1.~6. (현행과 같음) 7. <u>당해 직속기관 소속</u> <u>(기관장 제외)</u> 8.~13. (현행과 같음)
<u><신설></u>	14. <u>당해 직속기관 소속 6급 이하</u> <u>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u> <u>(단,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u> <u>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u>